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03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이소영·복기왕·박지원

위성곤 • 박해철 • 김 윤

김문수 · 권향엽 · 박용갑

강준현 • 박희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과 재활용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 또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폐기물 처리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의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자임.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더불어 '그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음.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 을 것임.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였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대상자에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9.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토지의 양도 또는 제17조제9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로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2.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제48조의3제1항 중 "제48조제2항"을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소유자였던 자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 중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양도 또는 제17조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치명령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 4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 명령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 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 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 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 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 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 9.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 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 이후 토지의 양도 또는 제17 <u>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u> 자

<신 설>

조제9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용
한 이후 부적정처리폐기물
이 발생한 경우로서 부적
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
한 이후 그 토지의 소유권

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부 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사 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 실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 서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 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u>②</u>·<u>③</u> (생 략)

④ 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저

-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 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③ (생 략)

해당하는 자
2.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
하는 자
3.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u>⑤</u> <u>제4항</u>
세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u>제48조제3항</u>

② · ③ (현행과 같음)